

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.

-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「가족관계등록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-

- 오늘(6. 30.)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【주요 내용】

▶ 의료기관의 출생통보

- ①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
- ②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
-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·읍·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

▶ 시·읍·면의 직권 출생등록

- 시·읍·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(출생 후 1개월)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
-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

※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-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'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'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1. 개정 배경

-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·유기·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 - ※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'15년부터 '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,236명 있다는 사실 확인
- 법무부는 보건복지부, 법원행정처,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·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을 '22. 3. 4.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.
-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'23. 6. 30. (금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2. 주요 내용

① 출생사실의 통보 (법 제44조의3)

-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,
 -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*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,
 - * 모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, 출생자의 성별·출생연월일시 등
 -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
 -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
② 출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(법 제44조의4)

○ 시·읍·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(출생 후 1개월)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-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*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(催告)하여야 합니다.

*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, 혼인 외 출생자는 모

○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,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,

- 시·읍·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 하여야 합니다.

③ 시행일 (부칙 제1조)

○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.

3. 향후 계획

○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'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'가 보장되고 (헌법재판소 2023. 3. 23. 2021헌마975),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,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☐

담당 부서	법무실 법무심의관실	책임자	법무심의관	구승모	(02-2110-3164)
		담당자	검 사	김영민	(02-2110-3505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4조의3(출생사실의 통보) ①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“출생정보”라 한다)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(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기재하여야 한다. 1.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. 성명 나.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. 다만,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 2. 출생자의 성별, 수(數) 및 출생 연월일시 3.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(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을 말한다)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.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,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

<신 설>	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 제44조의4(출생신고의 확인·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)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·읍·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시·읍·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(催告)하여야 한다. ③ 시·읍·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. 1.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.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, 출생신고 최고, 출생자의 성명·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<신 설>	제44조의5(자료제공의 요청) 시·읍·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	<부 칙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